

인천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737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7376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5 선고 2018가소861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원고보조참가인B

피고, 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변론 종결 2020. 8. 20.

판결 선고 2020. 9. 1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5. 선고 2018가소861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1,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D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E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 2018. 2. 3. 17:3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건물 G동 앞 교차로(다음부터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지나게 되었다. 원고 차량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원고 진행방향 오른쪽 교차로 코너에서 원고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의 2차선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주행을 시작하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문을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H심의위원회는 2018. 11. 19.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8. 12. 13.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20% 상당액인 1,741,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신호 및 주위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H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수리비 1,741,5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주행 신호와 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진입하려는 도로의 3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위 차량을 피해 2차선으로 진입하고자 잠시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정차한 위치와 정차한 모습으로 볼 때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의 2차선으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 차량은 정차 당시 차량 앞부분이 2차선과 3차선 경계 부분에 있어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 피고 차량과 매우 근접하여 지나게 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이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차량의 주행 경로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교차로를 주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산정함이 적정하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2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20%에 해당하는 1,741,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수리비 1,741,5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재남

판사임정택

판사김종민